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2. 21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2월 9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2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·구성(안 제3조~제4조)
-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(안 제5조~제6조)
- 지원단의 재난현장 설치(안 제7조)
- 재난상황 공유·보고 및 활동 평가·기록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제정 조례안은
  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 9개의 조문과 부칙 및 2개의 별표로 구성됨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,
  -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
 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의 구성을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구성된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였음.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영등포구와 자원봉사센터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하여 공동단장이 함께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서,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7개의 자치구에서 공동단장으로 구성하고 있음.
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원단과 재난 상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, 지원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장이 지원단 활동을 평가하도록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·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98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2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, 운영, 구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지원단 재난현장 설치(안 제7조)
- 마. 재난상황 공유·보고, 활동 평가·기록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문구 추가 권장

-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에 따른 신체적, 사회·문화적 차이 등의 고려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, 재난환경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보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물품, 장비 수급·지원에 대한 명시 필요

▷ [별표2]의 활동관리팀 담당 사무 중 ‘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, 장비 소요 파악’과 활동지원팀 담당 사무 중 ‘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’에 ‘자원봉사자의 성별, 연령,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’ 문구 추가 권장사항 조례안 반영

라. 입법예고(2023. 1. 5. ~ 1. 25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 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 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지원단의 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지원단의 공동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

**제5조(단장의 임무)**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무팀의 편성)**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활동관리팀
3. 활동지원팀
4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단의 설치)**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**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**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**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**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
2.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
3.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
4.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
5.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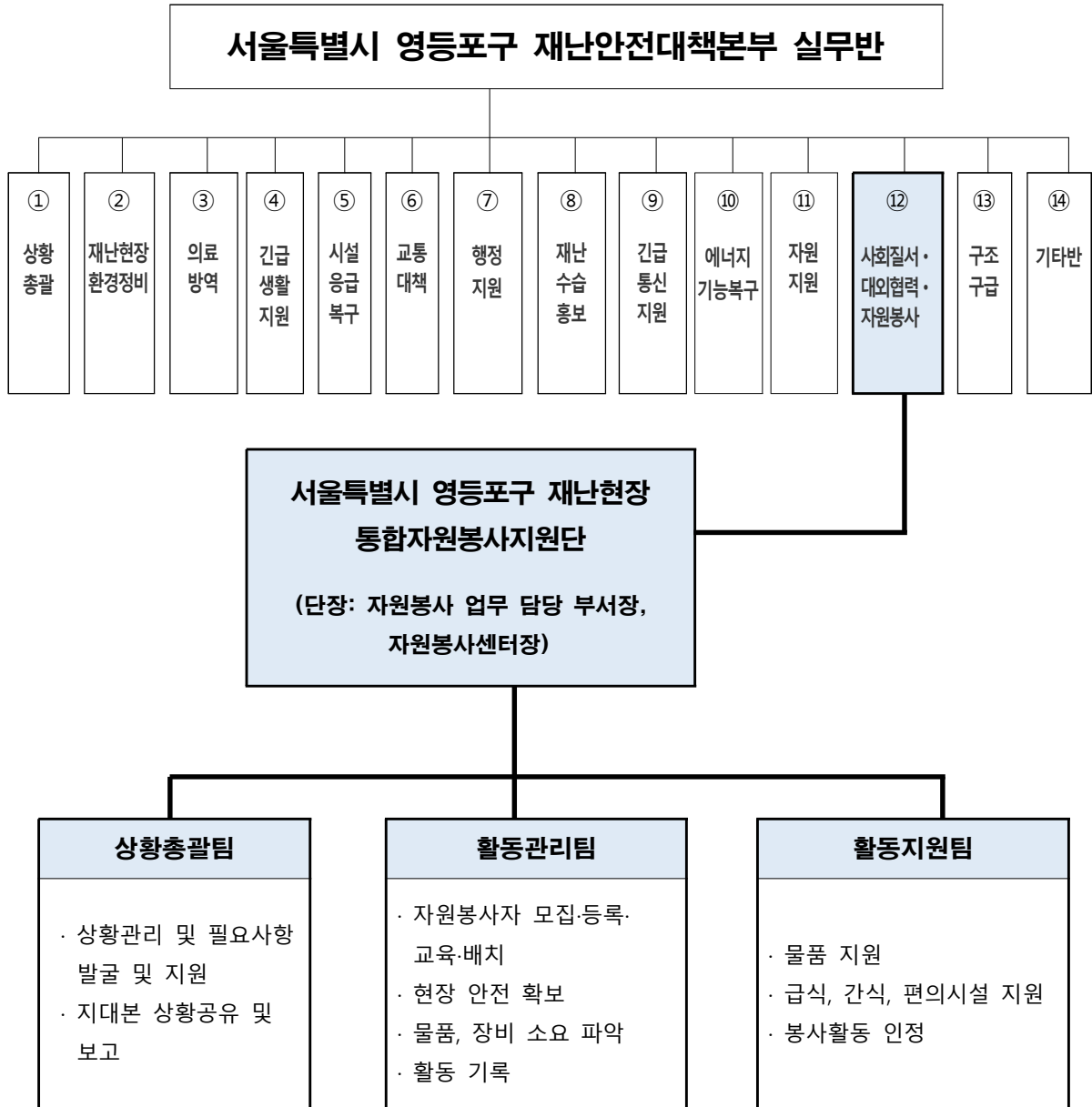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

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구성

(제6조제2항 관련)

팀 명		직 위	담당사무
단	장	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	▶ 지원단 행정·재정 총괄
		자원봉사센터장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실 무 팀	상 황 총 괄 팀	자원봉사 업무 담당 팀장, 직원	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▶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(상황 공유 및 보고 등) ▶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
		자원봉사센터 직원	▶ 재난 발생 시 지원단 운영 관련 현장 피해 상황 및 수요 파악 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, 지원
	활 동 관 리 팀	자원봉사센터 직원	▶ 자원봉사자 모집, 등록, 교육, 배치 조정 ▶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확보 ▶ 자원봉사자의 성별, 연령,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, 장비 소요 파악 ▶ 자원봉사 활동 기록 등
		자원봉사센터 직원	▶ 자원봉사자의 성별, 연령,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▶ 자원봉사자 급식, 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